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28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, 특별회계 본래의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을 유도하고자 함.

## 2. 수정주요내용

가. "일반회계로의 전출"로 함(안 제4조제2항제2호).

나. "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"를 신설함(안 제4조제3항).

다. "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"로 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일반회계로의 전출

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|
|---|---|---|
| <p>제4조(세출)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제4조(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조 제7호,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.</p> <p>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위탁</p> <p>2. 일반회계로의 전출 (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제4조(세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일반회계로의 전출</p> <p>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|